

2024학년도 재외국민전형 모집 요강



경성대학교 입학관리팀

목 차

I. 전형일정	1
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III. 지원자격	4
IV. 제출서류	7
V. 전형방법 및 면접고사	8
VI. 원서접수 및 전형료	8
VII. 합격자 발표 및 등록	9
VIII. 수험생 유의사항	10
IX.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11
X. 서식	12
[서식1]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위임)서	12
[서식2] 수학기간 기록표	14
[서식3] 외국학교 조사표	15

I.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접수		2023. 9. 11(월) ~ 9. 15(금) 18:00까지	입시홈페이지	- 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http://ipsi.ks.ac.kr) - 입학원서에 증명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증명사진(3×4cm) 준비 필요 ※ 입학원서는 원서접수 후 출력 - 원서접수 확인은 접수 다음날부터 입시홈페이지에서 확인(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임)
서류접수		2023. 9. 11(월) ~ 9. 18(월)	입학관리팀 (정보관 101호)	- 서류제출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가능 - 서류 우편 제출 : 접수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리벨을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 후 우체국에서 수취인 후납 부담으로 발송(착불 불필요), 2023. 9. 18(월) 우편소인까지 유효함 - 서류 방문 제출 : 2023. 9. 18(월) 17:00까지 입학관리팀으로 제출 ※ 입학관리팀 주소 : (48434) 부산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성대학교 입학관리팀(정보관 101호)
면접고사		2023. 11. 18(토) ~ 11. 19(일)	입시홈페이지 공지	2023. 11. 16(목) 이후 입시홈페이지에 공지
최초 합격자	발표	2023. 12. 15(금)	입시홈페이지 공지	경성대학교 입시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문서등록
	최초등록	2023. 12. 18(월) ~ 12. 21(목)		
1차 총원 합격자	발표	2023. 12. 21(목) 23:00 이후	입시홈페이지 공지	- 총원합격자는 개별 연락하지 않음(입시홈페이지 공지) - 합격통보 이후 경성대학교 입시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문서등록을 통해 총원합격자 등록 가능
	총원등록	2023. 12. 22(금) 16:00까지		
2차 이후 총원합격자		별도 공지	입시홈페이지 공지	총원합격자는 개별 연락하지 않음(입시홈페이지 공지)
등록금 납부 (최종등록)		2024. 2. 7(수) ~ 2. 13(화)	입시홈페이지 공지	등록금고지서는 2024. 2. 6(화) 18:00부터 입시홈페이지에서 출력

▶ 위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교직 교직이수 가능 학부(과), 사범 교직이수 가능 학부(과), 간호교육인증 간호교육인증평가(2016년 6월 13일~2026년 6월 12일/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증
건축학 교육인증 건축학 교육인증제(2021년 7월 31일~2026년 7월 30일/사) 한국건축학 교육인증원(KAAB) 인증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재외국민전형	해외전교육과정 이수자전형	새터민전형
		코드	학부(과)				
문과대학	인문	01	인문문화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직 일어일문학전공 역사문화학전공 교직	100	100이내	무제한	무제한
		02	글로벌문화학부 문화기획학전공 문화콘텐츠학전공 문화서비스학전공	90	90이내	무제한	무제한
		03	영어영문학과 교직	80	80이내	무제한	무제한
		04	중국학과 교직	65	60이내	무제한	무제한
		05	문헌정보학과 교직	45	40이내	무제한	무제한
		06	유아교육과 사범	30	10이내	-	-
		07	윤리교육과 사범	14	10이내	-	-
		08	심리학과	40	40이내	무제한	무제한
사회과학대학	인문	11	법학과	50	50이내	무제한	무제한
		12	경찰행정학과	50	50이내	무제한	무제한
		1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0	40이내	무제한	무제한
		14	광고홍보학과	47	40이내	무제한	무제한
		15	사회복지학과	60	60이내	무제한	무제한
상경대학	인문	21	경제금융물류학부 경제금융학전공 물류학전공	85	80이내	무제한	무제한
		22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학전공	41	40이내	무제한	무제한
			외식서비스경영학전공	40	40이내	무제한	무제한
		23	경영학과	130	130이내	무제한	무제한
		24	국제무역통상학과	81	80이내	무제한	무제한
		25	회계학과	81	80이내	무제한	무제한
	자연	26	빅데이터응용통계학과	40	40이내	무제한	무제한
공과대학	공학	41	기계자동차공학과	40	40이내	무제한	무제한
		42	메카트로닉스공학과	39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43	환경공학과	39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44	토목공학과	39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45	도시계획학과	39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46	건축학과(5년제) 건축학 교육인증	35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47	실내건축학과	30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48	산업경영공학과	37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49	신소재공학과	39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50	전기공학과	50	50이내	무제한	무제한
		51	전자공학과	39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52	컴퓨터공학과	50	50이내	무제한	무제한
		53	소프트웨어학과	50	50이내	무제한	무제한
		54	정보통신공학과	39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55	화학공학과 교직	34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재외국민전형	해외전교육과정 이수자전형	새터민전형
		코드	학부(과)				
예술종합대학	예체능	61	음악학부 교직	40	40이내	무제한	무제한
		62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학전공 교직	35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산업디자인학전공	30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63	연극영화학부				
			연극전공 교직	37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영화전공 교직	35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뮤지컬전공	16	10이내	무제한	무제한
		64	영상애니메이션학부 영상학전공 애니메이션학전공	60	60이내	무제한	무제한
		65	미디어콘텐츠학과	30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66	스포츠건강학부				
			체육학전공 교직	40	40이내	무제한	무제한
		67	현대미술학과 교직	34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68	공예디자인학과 교직	65	60이내	무제한	무제한
69	사진학과 교직	30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70	패션디자인학과	50	50이내	무제한	무제한		
생명보건대학	자연	71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	71	70이내	무제한	무제한
		72	물리치료학과	30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공학	73	식품생명공학과 교직	40	40이내	무제한	무제한
	자연	74	식품영양학과	45	40이내	무제한	무제한
		75	동물보건생명과학과 교직	30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76	화장품학과	30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77	스마트바이오학과	30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공학	78	제약공학과	34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산학혁신융합대학	예체능	81	시미디어학과	30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자연	82	시수리학과 교직	20	20이내	무제한	무제한
		83	에너지과학과	30	30이내	무제한	무제한
총 모집인원					10명	무제한	무제한

▶ 교직이수 : 교육부 교원검정령에 의거 교원양성과정 재승인·이수정원 조정 등으로 인하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Ⅲ. 지원자격

1. 대상 및 요건

-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검정고시는 인정함

전형명	지원 대상	지원자격																								
재외국민 전형	국외 근무자의 자녀	외국에서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하는 자의 자녀로서 고교 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다음의 최저 국외 재학·거주·체류 기간을 충족해야 함 <table> <tr> <th colspan="2">구분</th><th>최저 국외 재학·거주·체류기간</th></tr> <tr> <td rowspan="3">학생</td><td>재학</td><td>3년</td></tr> <tr> <td>거주</td><td>3년</td></tr> <tr> <td>체류</td><td>재학 기간의 3/4이상</td></tr> <tr> <td rowspan="3">보호자</td><td>재학</td><td>3년</td></tr> <tr> <td>거주</td><td>3년</td></tr> <tr> <td>체류</td><td>재학 기간의 2/3이상</td></tr> <tr> <td rowspan="3">배우자</td><td>재학</td><td>3년</td></tr> <tr> <td>거주</td><td>3년</td></tr> <tr> <td>체류</td><td>재학 기간의 2/3이상</td></tr> </table>	구분		최저 국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학생	재학	3년	거주	3년	체류	재학 기간의 3/4이상	보호자	재학	3년	거주	3년	체류	재학 기간의 2/3이상	배우자	재학	3년	거주	3년	체류	재학 기간의 2/3이상
구분		최저 국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학생	재학	3년																								
	거주	3년																								
	체류	재학 기간의 3/4이상																								
보호자	재학	3년																								
	거주	3년																								
	체류	재학 기간의 2/3이상																								
배우자	재학	3년																								
	거주	3년																								
	체류	재학 기간의 2/3이상																								
국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전형	국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재외국민, 결혼이주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새터민 전형	북한 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2. 지원자격 인정기준

○ 공통

- 입학허용기간
 - 고등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초)부터 2년 6개월 이내(2개 학년도만 허용)
 - 단, 군복무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은 입학허용기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함
 - 전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은 입학허용기간 제한 없음
- 외국학교 인정기준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되며,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외국학교로 인정함
 - 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해당국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에 재학한 기간만 인정하며,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제외함
 -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의 학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초·중·고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 12년 과정의 기간 중 부족한 학교과정 기간만큼의 해당국 대학과정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함 (외국의 1~6학년 과정은 초등학교, 7~9학년 과정은 중학교, 10~12학년 과정은 고등학교로 인정함.
 - 단, 13학년 학제의 경우 13학년을 마친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자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국가로 전·편·신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학기간의 부족분은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인정함(단, 전교육과정 이수자는 별도 해설)
 - 편법이나 부정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월반(1학기 이내 인정, 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및 조기 졸업을 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단, 지원자격 취득 기간으로는 산입하지 않음
 - 해당 학기/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재학 기간, 근무 기간, 거주 및 체류 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2023. 9. 15)으로 계산함
-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이내로 늦은 국가(예: 일본)의 경우 예외적으로 우리 대학 입학 후 고교졸업을 인정할 수 있음

○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7호)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근무자의 근무형식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분	내용
학생 이수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체류기간	•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7호)

- 국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육과정이수자로 인정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국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학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등학교 소재국에 상관없이 지원자격이 부여됨

IV. 제출서류

전형명	제출 서류
전체전형(공통)	1. 입학원서(본교양식 - 원서접수 후 출력) 2. 수학기간기록표(본교 양식 - 모집요강 참고) 3. 외국학교조사표(본교 양식 - 모집요강 참고)
재외국민전형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 학생) 7. 여권 사본(부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11.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2.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국외전교육과정 이수자전형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 재학증명서 3. 초·중·고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사본
새터민전형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유의사항

- 외국 학교 및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또는 소재국 영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한 유일본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원본대조필 가능합니다.
(본교 입학관리팀 확인)
-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 번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 학생)의 서명은 여권상의 서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위 표의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상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이외에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의 근무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간에 회사명이 다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제출)

V. 전형방법 및 면접고사

▶ 전형방법

- 구술면접을 100% 반영하여 총점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합격자 중 미등록자가 있을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 1) 국외 고등학교 재학기간 2) 국외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3) 국외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 소수점 처리 방법 : 면접평균 성적의 소수점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합니다.

▶ 면접고사

- 면접방법 : 비대면 면접
- 면접일자 : 2023. 11. 18(토) ~ 11. 19(일)
※ 면접일시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23. 11. 16(목) 이후 입시홈페이지에 공지
- 평가위원 2인 이상이 지원자의 기본소양, 소질 및 적성, 인성, 의사표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면접 불참자와 면접고사 성적 60점 이하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평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반영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 유의사항

- 면접고사 응시 일자 및 순서 등의 일정 조정은 불가하므로 전형 일정의 중복을 피하여 지원바랍니다.
- 면접고사 실시와 관련된 각종 부정행위가 적발 될 경우 수험생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VI. 원서접수 및 전형료

1. 인터넷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3. 9. 11(월) ~ 9. 15(금)

▶ 접수방법

1단계	-	경성대학교 입시홈페이지 접속
▼		
2단계	-	“수시 원서접수” 배너 클릭
▼		
3단계	-	원서접수 사이트 로그인(비회원인 경우 회원가입)
▼		
4단계	-	입학원서 입력 및 입력사항 확인
▼		
5단계	-	전형료 결제
▼		
6단계	-	입학원서 접수확인
▼		
7단계	-	우편 발송용 표지 출력

▶ 유의사항

- 인터넷 원서접수는 반드시 전형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인정됩니다.
- 전형료 결제 후에 접수가 완료된 입학원서는 내용수정, 접수취소 및 전형료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생각하고 원서를 접수하고 결제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전형료

▶ 전형료 : 44,000원

▶ 전형료 환불

• 접수가 완료된 입학원서는 접수취소 및 전형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면접고사에 본인이 불참한 경우 전형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단, 아래의 경우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지원자격 미달, 기타 수험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 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잔액을 반환합니다.

Ⅶ.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최초 합격자	발표	2023. 12. 15(금)	입시홈페이지 공지	• 경성대학교 입시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문서등록
	최초등록	2023. 12. 18(월) ~ 12. 21(목)		
1차 총원 합격자	발표	2023. 12. 21(목) 23:00 이후		• 총원합격자는 개별 연락하지 않음(입시홈페이지 공지) • 합격통보 이후 경성대학교 입시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문서등록을 통해 총원합격자 등록 가능
	총원등록	2023. 12. 22(금) 16:00까지		
2차 이후 총원합격자		별도 공지		• 총원합격자는 개별 연락하지 않음(입시홈페이지 공지)
등록금 납부 (최종등록)		2024. 2. 7(수) ~ 2. 13(화)		• 등록금고지서는 2024. 2. 6(화) 18:00부터 입시홈페이지에서 출력

▶ 유의사항

- 합격여부 및 온라인 문서 등록은 본교 입시홈페이지에서 지원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기한 내 미등록시 입학이 취소되며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총원합격 안내를 위한 전화 통보 시 3회 통화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자는 미등록 처리하오니, 총원합격 발표 기간 일정을 확인하고 대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 수시 합격자가 총원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Ⅷ. 수험생 유의사항

▶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관련

- 원서접수 및 전형 기간 중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지원자의 주소,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비상연락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형 기간 중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입학관리팀으로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연락 두절로 합격자 통보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접수된 원서 및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전형 및 모집단위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생각한 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입력상의 착오로 인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학에 취소하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복수지원 관련

- 수시모집에서는 6개 전형(재외국민전형을 포함한 모든 전형, 부모 모두 외국인 전형은 제외)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 가능합니다.
※ 수시모집에서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 완료시간을 기준으로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
- 수시모집에서의 일반전형(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외 전형)과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간에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시모집 대학(산업·교육·전문대학 포함) 합격자(최초·충원 포함)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 할 수 없습니다.
-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 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에 무효로 합니다.

▶ 합격자 발표 및 온라인 문서 등록 관련

- 합격여부 및 온라인 문서 등록은 본교 입시홈페이지에서 지원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기한내 미등록시 입학이 취소되며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충원합격 안내를 위한 전화통보 시 3회 통화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자는 미등록 처리하고, 차순위자를 충원합격 처리합니다. 지원자는 충원합격 발표 일정을 확인하고 대기하여 주시고,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문서 등록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을 취소합니다.

▶ 이중등록 금지

-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 수시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이중등록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학을 취소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해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해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입학전형 자료·성적에 관한 사항은 일절 공개 및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단, 질병 및 병역복무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함)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IX.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대학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이메일 주소, 환불계좌번호, 학력관련 정보(출신학교명, 출신학교별 재학기간, 졸업(예정)연도 등), 외국 거주 및 체류기간 등

▶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의 입학, 학사, 통계업무, 오리엔테이션 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학관리팀으로 문의바랍니다.

TEL : (051) 663-5555 / FAX : (051) 663-4038 / 입시홈페이지 : <http://ipsi.ks.ac.kr>

[서식1]

사실증명 발급 · 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Free online application available at the government website (www.gov.kr) for the issuance of your own Certificate of Fact. Thos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will be required to present only their ID cards without having to complete this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 This field is only for Korean citizens.		☐ 포함 ☐ 미포함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name, address or status of sojourn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 포함 Yes ☐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 · ·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 (Purpose) 재외국민과외국인전환 합격자 출입국 사실 확인용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경성대학교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락처 (Phone No.) 051-663-5555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경성대학교 입학 관계자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 · 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 Si · Gun · Gu or Eup · Myeon · 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 · 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년(Year) 월(Month) 일(Day)

발급 · 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complete the shaded sections, and please place a check mark for applicable brackets[].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앞쪽 신청인의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전화번호란에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각각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가.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2)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Where a principal is in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benefits of the principal:

- 1)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2)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only when the spouse is deceased and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of those listed in the category 1)]

- 나.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a non-Korean principal has permanently left Korea:

- An employer of the principal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다.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Where a favorable ruling is confirmed in a trial on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here the Certification is neede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verdue debts, or where there is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concerned (only when a debt becomes overdue or a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allows a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an original due date,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Creditor who intend to receive or access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foreigner concerned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fixed date stamp affixed on the agreement, etc.

- 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public interest.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s shall present his/her own ID card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D card (or a copy) of the authorizing person.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You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or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by submitting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or falsely done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authorization.

7. 국민은 1961.1.1.부터, 외국인은 1979.1.1.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가능합니다.

Records on this certificate only cover the entry/departures from January 1, 1961, for Korean nationals and from January 1, 1979, for Foreigners.

[서식2]

수학기간 기록표

수험번호	
모집단위	
성명	
지원자격구분	

1. 초·중·고 수학기간 기록 (초등학교부터 연도별 순서에 의해 수학한 모든 학교를 기재)

학 교 명	학교소재지		수 학 기 간						해당하는 학년, 학기에 ● 표시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을 경우 ▲ 표시)															
	국가명	도시명	기 간				재학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수학기간은 재학증명서 상의 기간을 기재함

국내·외 총 재학기간	년 개월	외국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	------	-----------	------	-----------	------

2. 특이사항 (월반, 학기 성적기록 누락, 휴학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만 아래의 표에 기재)

내 용	기 간	학년 / 학기	사 유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_____ (인 또는 서명)

[서식3]

외국학교 조사표

수험번호	
모집단위	
성명	
지원자격구분	

학교명	주소	팩스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홈페이지 URL
	학제) - - (1학기) 월 일~ 월 일 (2학기) 월 일~ 월 일 (3학기) 월 일~ 월 일 (4학기) 월 일~ 월 일				
	(학제) - - (1학기) 월 일~ 월 일 (2학기) 월 일~ 월 일 (3학기) 월 일~ 월 일 (4학기) 월 일~ 월 일				
	(학제) - - (1학기) 월 일~ 월 일 (2학기) 월 일~ 월 일 (3학기) 월 일~ 월 일 (4학기) 월 일~ 월 일				
	(학제) - - (1학기) 월 일~ 월 일 (2학기) 월 일~ 월 일 (3학기) 월 일~ 월 일 (4학기) 월 일~ 월 일				
	(학제) - - (1학기) 월 일~ 월 일 (2학기) 월 일~ 월 일 (3학기) 월 일~ 월 일 (4학기) 월 일~ 월 일				
	(학제) - - (1학기) 월 일~ 월 일 (2학기) 월 일~ 월 일 (3학기) 월 일~ 월 일 (4학기) 월 일~ 월 일				

- 1) 학교는 외국 소재학교만 기재하고, 해당 학교의 공식명칭을 기입해야 합니다.
- 2) 팩스번호와 전화번호는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반드시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예) 한국 82-51-663-5555
- 3) 학제는 외국학교 초, 중, 고 학제를 기입해야 합니다. 예) 한국의 경우 6(초)-3(중)-3(고)
- 4) 학기는 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입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_____ (인 또는 서명)